

규약 개정(안)

| 구분 | 개정 前 | 개정 後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|----|
| 규약 개정 | <p>제 13 조 【구성 및 운영】 ① 본 조합 산하에 지방본부, 지부, 분회를 둔다.</p> <p>② 산하조직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 지방조직운영규정에 의한다.</p> | <p>제 13 조 【구성 및 운영】 ① 본 조합 산하에 지방본부, 지부를 둔다.</p> <p>② 본 조합 산하에 분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이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 산하조직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 지방조직운영규정에 의한다.</p> | |
| | <p>제 25 조 【의결사항】 ④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.....</p> <p>3.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</p> <p>4.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....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1. 임기 내 대표자 및 임원 신임에 관한 사항</p> <p>2. 규약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</p> <p>3. 조합의 합병, 분할에 관한 사항</p> <p>4.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</p> | <p>제 25 조 【의결사항】 ④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.....</p> <p>3.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</p> <p>4.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....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1.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신임에 관한 사항</p> <p>2. 규약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</p> <p>3. 조합의 합병, 분할에 관한 사항</p> <p>4.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</p> | |
| | <p>제 33 조 【의결사항】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.....</p> <p>10. 기타 중요한 사항</p> | <p>제 33 조 【의결사항】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.....</p> <p>10. 지방본부의 신설 및 통·폐합에 관한 사항</p> <p>11. 기타 중요한 사항</p> | |

| 구분 | 개정 前 | 개정 後 | 비고 |
|-------|--|---|----|
| 규약 개정 | <p>제 34 조 【구성】 ①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중앙본부에 전임된 임원 및 조합간부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· 부위원장 · 사무총장 2. 중앙본부 실장 3. 중앙본부 국장 | <p>제 34 조 【구성】 ①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중앙본부에 전임된 임원 및 조합간부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· <u>사무총장</u> · <u>부위원장</u> 2. 중앙본부 <u>실·처장</u> 3. 중앙본부 국장 | |
| | <p>제 36 조 【의결사항】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1. 기타 중요한 사항</p> | <p>제 36 조 【의결사항】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1. 지방본부결성준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</u> <u>12. 기타 중요한 사항</u></p> | |
| | <p>제 37 조 【구성】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· 부위원장 · 사무총장 2. 중앙본부 실장 3. 지방본부위원장 4. 지부장 | <p>제 37 조 【구성】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· <u>사무총장</u> · <u>부위원장</u> 2. 중앙본부 <u>실·처장</u> 3. 지방본부위원장 4. 지부장 | |
| 규약 개정 | <p>제 46 조 【임원】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2.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3. 각 실장 4. 회계감사위원 | <p>제 46 조 【임원】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2. <u>사무총장과 부위원장</u> 3. 각 <u>실·처장</u> 4. 회계감사위원 | |

| | | | |
|----------|---|--|----|
| | <p>제 49 조 【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】 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2. 부위원장, 사무총장, 실장은 조합 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시 조합원 중 에서 대의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</p> | <p>제 49 조 【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】 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2. <u>사무총장, 부위원장, 실·처장</u>은 조합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시 조합 원 중에서 대의원의 직접·비밀·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</p> | |
| 구분 | 개정 前 | 개정 後 | 비고 |
| 규약 개정 | <p>제 52 조 【임원 및 중앙간부의 임무】</p> <p>② 사무총장은 상근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하며, 각 실장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</p> <p>④ 사업지원실장은 조합의 사무, 재정, 조합원의 복지후생, 노사교섭 및 대외협력,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 등 실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⑤ 정책실장은 회사의 경영 및 기술계획을 분석하며, 장·단기 기본계획 및 방침을 수립 시행하고,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책, 국제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개발한다. 또한 대내 대외 조합홍보와 관련된 조합활동 홍보계획을 수립하고, 실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⑥ 조직실장은 조직운영,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, 쟁의지도, 의전활동, 실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| <p>제 52 조 【임원 및 중앙간부의 임무】</p> <p>② 사무총장은 상근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하며, 각 <u>실·처장</u>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</p> <p>④ <u>사무처장은 조합의 사무, 재정, 조합원의 복지후생, 산업안전, 노사교섭 등 처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⑤ <u>조직처장은 조직운영,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, 쟁의지도, 의전활동, 대외협력의 증진 및 중·장기 교육훈련 목표 및 방침을 결정하며,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 등 처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⑥ <u>정책실장은 회사의 경영 및 기술계획을 분석하며, 장·단기 기본계획 및 방침을 수립 시행하고,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한다. 또한, 대내 대외 조합활동 홍보계획을 수립하며</u></p> | |

| | | | |
|-------|--|---|----|
| | <p>⑦ 각 실 산하의 국장의 업무는 처무규정에 의한다.</p> | <p><u>국제교류와 관련된 제반 업무 등, 실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⑦ 각 <u>실·처</u> 산하의 국장의 업무는 처무규정에 의한다.</p> | |
| 구분 | 개정 前 | 개정 後 | 비고 |
| 규약 개정 | <p>제 54 조 【직무대행】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다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무총장 2. 부위원장 | <p>제 54 조 【직무대행】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없을 때는 <u>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무총장 2. 부위원장 <u>3. 사무처장</u> <u>4. 조직처장</u> <u>5. 정책실장</u> | |
| | <p>제 55 조 【부서】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실을 두며, 필요 시 그 산하의 업무에 따른 국(부)을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지원실 2. 정책실 3. 조직실 | <p>제 55 조 【부서】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<u>실·처</u>를 두며, 필요 시 그 산하의 업무에 따른 국(부)을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사무처</u> <u>2. 조직처</u> <u>3. 정책실</u> | |
| 구분 | 개정 前 | 개정 後 | 비고 |
| 규약 개정 | | <p><u>부 칙(2020.04.23)</u></p> <p><u>제 1 조 【시행일】 본 규약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 2 조 【준용】 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</u></p> <p><u>제 3 조 【경과조치】 본 규약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의 규약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.</u></p> | |